

보육실습 개정안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예비보육교사의 인식 및 요구

최석란*, 서원경**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특임교수**

Perception and need of directors, child care teachers, and pre-service teachers on revised child care practicum

Suk-Ran Choi*, Won-Kyung Seo**

Dept. of Child,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women's University Childcare Education center**

요약 본 연구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보육실습 개정안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예비보육교사의 인식 및 요구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안면타당도와 문항의 내적 신뢰도를 구한 설문지를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4년제 관련학과 재학생인 예비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배부하고 독립표본 x2-검정과 t-검정,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가 예비보육교사보다 보육실습 개정안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경력과 상관없이 소지자격,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보육실습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인식하고 있었고 보육교사의 경우는 소지자격보다 개정과 관련된 재교육이 인식을 좌우하였다.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예비보육교사 모두 보육실습 기간 연장에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다만, 기간 연장에 따른 보육교사 및 예비보육교사의 실습지도와 실습 과정 수행의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한 양성기관과 보육실습기관의 사전교육 및 협의체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보육실습기관의 질을 선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추가 요구가 있는 바, 이와 관련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보육실습 개정안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추후 개정안의 보육현장 적용과 관련된 연구가 병행된다면 보다 더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어린이집, 보육실습, 보육실습개정안, 인식, 요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and need for the revised child care practicum (January, 2017) in Korea. The participants were in three groups: 32 directors, 143 child care teachers and 130 pre-service teachers. Questionnaire were used to collect the data and t-test, x-test and ANOVA were done for analysis. All three groups responded positively for the revised edition (extending the period of practicum from 4 weeks to 6 weeks). And perceived the extending the period is necessary for the quality of child care centers. Directors with the higher level of education perceived the revision clearly than others. Most of teachers perceived the change through teacher retraining program. All groups pointed out for the implementing the revised edition successfully, supporting and cooperative system is in need for three groups.

Key Words : Childcare center, Childcare practicum, Revision of practicum, Perception, Needs

Received 19 October 2017, Revised 30 November 2017
Accepted 20 December 2017, Published 28 Decem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Seo, Won Kyung
(Seoul women's University Childcare Education center)
Email: wonkyung410@sw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보육에서 이론과 실천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1]. 보육실습은 양성과정 속에서 배운 이론을 보육의 실제 현장에서 실천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보육에서의 교사와 관련한 변인에 대한 중요성이 커져가는 요즘에[2,3] 보육실습은 보육교사로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는 과정을 알게 되며 아동들과 직접 접촉하는 경험을 통해서 아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현장 교사의 교수법을 관찰하고 배우는 기회를 갖게 되는 등 그 의의가 매우 높아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종적인 교육과정이다[4].

보육실습과 관련된 연구는 보육실습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영향 모두를 보고하고 있다. 긍정적인 효과로는 보육교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구체적 역할 인식이 보고되고 있으며[6,7,8,9]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예비보육교사가 더 이상 보육교사를 희망하지 않게 되고 높 이교수효능감이 낮아지는 것 등이 보고 되고 있다[13,14].

보육실습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예비보육교사를 지도하는 보육현장의 여러 관련 변인들, 즉, 보육실습기관의 열악한 질적 수준, 보육실습기관과 양성기관의 협력 부족[16] 및 지도교사의 능력과 역할[14,17,18], 짧은 실습 기간[4]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보육실습기관을 정원 15명 이상의 어린이집,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으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질 높은 보육실습기관을 선별하여 실습을 받을 수 없 고[19], 보육실습기관의 원장, 보육실습지도교사, 양성기관의 담당 교수진의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20], 전문적 자질을 갖춘 실습지도교사의 선별도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실습 기간도 다른 나라에 비해 짧아 현장에서의 예비보육교사가 자기 점검과 신념에 대한 적용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2016.1.12 공포)하고 보건복지부령을 공포하여 보육실습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증가시키고자 보육실습 과정을 개편하였다. 종전의 보육실습과 개편안의 보육실습과 관련된 내용과 비교해 보면, 실습 기간의 증가, 실습 과정의 분할, 실습 가능기관에 대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보육실습 기간은 4주, 160시간이

있던 것이 6주 240시간으로 총 2주, 80시간이 증가하였으며 종전에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에 한해서만 2회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을 모든 양성기관에서 2회에 나누어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습가능기관은 정원 15인 이상인 어린이집,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은 동일하나 평가인증 유지 기관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첨가되었다.

보육실습의 법적 내용이 개편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보육교사 양성과정 중 보육실습 교과목의 운영 및 보육실습 매뉴얼을 고지하고 양성기관의 사전교육 내용 및 보육실습의 계획과 준비, 과정, 평가에 대해 2016년 11월에 제시하였지만 일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이외에 교육 기회의 부재, 홍보 부족으로 양성기관과 보육실습기관에서는 개편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매뉴얼 내용을 숙지한다 하더라도 양성기관 및 보육실습기관에서 실습 기간 운영, 실습 내용 운영, 실습생의 학급 배치 등 실습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

그러므로 예비보육교사를 직접 지도해야 하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양성기관에서 보육실습에 직접 참여해야 하는 주체인 예비보육교사가 보육실습 개정안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와 보육실습 개정안의 목표, 내용을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보육실습 내용 변경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인식하는지, 추가적인 요구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각 집단별로 알아보고 각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은 보육실습 개정안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앞으로의 보육실습 방향을 설계하는데 꼭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장, 보육교사, 예비보육교사의 보육실습 개정안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를 살펴보고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1.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예비보육교사의 보육실습 개정안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예비보육교사의 보육실습 개정안에 대한 요구는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보육실습은 이론과 실제에 관한 통합적 교육의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교사로서의 자질을 최종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보육교사로서 현장에 투입되기 이전의 마지막 관문이 될 수 있다[5].

예비보육교사는 보육실습을 통해 어린이집 현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6], 보육실습을 통해 자기 존재를 다시 인식하고 교사의 역할을 인식하며[7], 보육실습 전·후 보육교사의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변화하는[8,9] 등 보육실습의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보육실습이 예비보육교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 예비보육교사는 보육실습 중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10,11,12] 보육실습 후 예비보육교사는 보육직무에 관해 심신이 고되며 낮은 임금을 받는 직업군으로 지각하여 보육교사를 희망하지 않았다[13]. 예비보육교사의 놀이교수효능감이 보육실습 후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4] 보육실습 기간에 관찰한 것들 중 부적합한 것조차도 학급운영에 있어 유일하거나 적절한 것으로 간주하고 보육교사가 된 이후에도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추구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다고 하였다[15].

예비보육교사가 보육실습 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원인은 예비보육교사를 지도하는 보육현장의 여러 관련 변인들, 즉, 보육실습기관의 열악한 질적 수준, 보육실습기관과 양성기관의 협력 부족[16] 및 지도교사의 능력과 역할[14,17,18]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심윤희(2016)의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위한 어린이집의 보육실습에 대한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는 질 높은 보육실습기관을 선별함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즉, 보육실습 가능 기관을 정원 15명 이상의 어린이집,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으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질적 수준이 낮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예비보육교사가 전문성을 성장시키기 어려운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19].

또한 보육실습기관의 원장, 보육실습지도교사와 양성기관의 담당 교수진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예비보육교사의 실습 과정에 양성기관

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실습의 부정적인 영향에 한 요인이 되고 있다[20]. 윤숙현(2009)의 연구에서도 보육교사 양성기관의 실습담당교수와 실습지도교사, 예비교사 간의 유기적인 관계 하에 치밀한 준비와 실행이 성공적인 보육실습을 위하여 요구된다고 하였다[5].

지도교사의 능력과 역할의 모호성도 보육실습의 부정적인 영향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14,17,18]. 보육실습 지도교사는 예비교사와 함께 생활하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의도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학습운영 전략, 상호작용의 예, 부모와의 면담모습을 보이게 된다. 예비보육교사는 이런 실습 지도교사의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되므로 보육실습에서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6]. 예비보육교사가 보육실습에서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배우는가는 실습지도 교사의 지도 조언의 내용, 실습지도교사와 예비보육교사의 관계 등에 의해 많은 부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실습지도교사가 어떠한 자질을 가지고 실습생 지도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습의 질이 결정된다[21]. 따라서 보육실습이 예비보육교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실습지도교사의 능력과 역할에 대한 점검도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보육실습 기간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하는 보육실습 기간이 짧고 미국,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에 비해서도 짧다는 것이다. 미국은 전국 수준에서 통용되는 CDA(Child Development Associate)가 있는데, 120시간의 이론과 480시간의 현장실습을 완료하여야 자격 시험을 볼 수 있다. 프랑스도 2세 이하의 영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경우 전문양성학교에서 3년간 1,50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6주에 해당하는 실습을 완료해야 한다. 프랑스는 영유아보육교사 전문양성과정 27개월 중 실습 기간이 9개월이고, 실습의 형태도 다양하다. 6주간 2가지 형태의 단기실습, 12주 장기 책임 교육실습이 있고, 아동이의 분야의 실습, 이론과 실습과정이 동시에 구성된다. 보육전문가(Nusery nurse)도 1년간 전문양성학교 교육과정 1,440시간 중 650시간이 실습이고, 보조교사에 해당하는 준보육전문가도 1년간의 과정(1,575시간)중 845시간이 실습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240기간, 노르웨이는 180학점 주 45학점이 교육실체와 교수를 위한 훈련이

며, 3년 과정 중 20주는 현장에서 보육의 실체를 참관한 다[21]. 다시 말해, 대부분의 나라에는 보육실습 기간이 우리나라의 4주 160시간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다[22]. 실습생들도 현장실습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보육실습의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4]. 실습생들은 전문적인 보육교사 양성을 위해서 실습기간을 6~8주로 확대하고 영아, 유아 보육을 다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4].

이처럼 보육실습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증가시켜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요구와 보육실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검토를 고려하여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2016.1.12 공포)하고 보건복지부령을 공포하여 보육실습 과정을 개편하였다. 보육실습 기간은 4주, 160시간이었던 것이 6주 240시간으로 총 2주, 80시간이 증가하였으며 종전에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에 한해서만 2회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을 모든 양성기관에서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습가능기관은 정원 15인 이상인 어린이집,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은 동일하나 평가인증 유지 기관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첨가되었다. 보육실습 지도교사는 이전과 동일하게 보육실습 지도교사 자격에 대한 기준을 제한하여, 보육교사1급자격증, 유치원1급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교사가 보육실습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을 3명 이내로 지도하도록 제시하였다

보육실습개정안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원장, 보육교사, 예비보육교사의 개정안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보육실습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한 어린이집 원장 32명, 보육교사 143명, 4년제 대학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예비보육교사 1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대상 중 어린이집 원장은 민간어린이집(50.0%)과 가정어린이집(28.1%)에 근무하는 일반어린이집 자격(75.0%)소지자

가 많았으며 4년제 대학(34.4%)과 대학원 졸업 이상(37.5%)의 보육경력 10년 이상자가 다수(56.3%)를 차지하였다. 보육교사도 민간어린이집(36.4%)과 가정어린이집(35.0%)에 근무하는 보육교사2급(44.8%)과 보육교사1급(43.4%)소지자로 보육관련 경력 1년에서 3년의 교사(37.1%)가 가장 많았다. 예비보육교사는 4년제 유아교육학 및 아동학과 학생들(99.1%)이 대부분이었으며 3학년(73.0)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연구 대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lassification	Variation	Frequency (people)	Percentage (%)
Director (N=32)	Director Qualification		
	Private Childcare Center	24	75.0
	Director Qualification		
	Family Childcare Center	8	25.0
	Director Qualification		
	Highest Level of Education Completed		
	Complete Childcare Teacher Education	3	9.4
	College Degree	2	6.3
	Academic Credit Bank System Degree	2	6.3
	University Graduate	11	34.4
	Post Graduate or more	12	37.5
	Other	2	6.3
	Childcare related Experience		
	less than 3 years	2	6.2
3 to 5 years	6	18.8	
6 to 9 years	6	18.8	
10 to 15 years	9	28.1	
16 to 20 years	2	6.3	
20 years or more	7	21.9	
Director Career			
less than 3 years	6	18.8	
3 to 5 years	8	25.0	
6 to 9 years	3	9.4	
10 to 15 years	9	28.1	
16 to 20 years	4	12.5	
20 years or more	2	6.3	
Child Care Teacher (N=134)	20 years or more	2	6.3
	National Nursery	30	21.0
	Private Nursery	52	36.4
	Family Nursery	50	35.0
	Workplace Nursery	9	6.3
	Corporate Nursery	2	1.4
	소지한 Childcare certification		
	Childcare Teacher Level 2 Certificate	64	44.8

Childcare Teacher Level 1 Certificate	62	43.4
Family Nursery Director Certificate	11	7.7
Private Nursery Director Certificate	6	4.2
Childcare related Experience		
less than 1 year	1	0.7
1 to 3 years	53	37.1
4 to 6 years	48	33.6
7 to 9 years	28	19.6
10 years or more	12	8.4
Other	1	0.7
Childcare training guidance Experience		
Exist	56	39.2
Doesn't Exist	87	60.8
Highest Level of Education Completed		
University	115	100
Major		
Early Childhood Education	71	61.7
Childcare Education	43	37.4
Other	1	0.9
Grade		
2nd grade	21	18.3
3rd grade	84	73.0
4th grade	10	8.7
Child care practicum		
Completed	4	3.5
Incompleted	111	96.5

3.2 연구 방법

3.2.1 연구 도구

보육실습 개정안에 대한 인식과 개정안 관련 요구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는 총 31 문항으로 일반 사항 9문항, 개정안 내용에 대한 인식 11문항, 개정안의 운영에 대한 요구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 사항은 응답자의 보육 관련 소지 자격, 학력, 경력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보육실습 개정안에 대한 인식은 실습기간 연장, 기관 조건 추가 등의 변경된 사항을 알고 있는지와 실습지도 교사 자격 기준, 실습지도교사 1인당 지도할 수 있는 예비보육교사 수 등 기존과 동일한 사항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 그 적정성과 변경 이유를 응답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보육실습 개정안의 운영에 대한 요구는 변경된 6주의 실습 기간을 연속 또는 분할로 운영할 때 가장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운영 방법에 대한 문항, 앞으로 보육실습 개정안이 수정된다면 반영하고 싶은 점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보육실습 개정안과 보육실습 매뉴얼[20]을 근거로 구성하였다.

개정안 내용에 대한 인식 중 5문항, 개정안의 운영에 대한 요구 6문항은 개정안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및 평가에 대한 이유를 묻는 명명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예비보육교사 각 3명에 안면 타당도를 구하여 수정·보완하였다. 개정안 내용에 대한 인식 관련 나머지 6문항은 개정안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3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내적 신뢰도를 구한 결과,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79였다.

<Table 2> Revised childcare practicum's survey composition and Reliability

Sub factor	Question number	Number of questions	Reliability (Cronbach's α)
Perception of revised childcare practicum	1, 2, 3, 4, 5, 6	6	.79

3.2.2 연구 절차 및 자료의 처리

보육실습 개정안과 관련된 인식 및 요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6년 12월 27일 ~ 2017년 3월 10일까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예비보육교사에게 설문지를 직접 배부, 우편을 통하여 수거하였고 특히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일부(11부, 34%)는 원장 개인 전자 우편을 통하여 배부하여 수거하였다.

원장 관련 설문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치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원장 7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보육교사 관련 설문은 서울에 위치한 보육교사교육원의 보수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임의 표집하여 총 200명을 설문 조사 하였으며, 예비보육교사는 4년제 대학 관련학과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하였다. 설문은 원장은 32부(45.7%), 보육교사는 143부(71.5%), 예비보육교사는 115부(88.46%)가 수거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을 위해 SPSS 23.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 변인들의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분석하였으며, 보육실습 개정안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도구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를 알아보았다.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인들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x^2 -검정과 t-검정,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정을 위해 Scheffe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4. 결과 및 해석

4.1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예비보육교사의 보육 실습 개정안에 대한 인식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예비보육교사에 따른 보육 실습 개정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예비보육교사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F=11.98, p<.001$) 사후검정 결과, 예비보육교사보다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가 보육실습 개정안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즉,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가 보육실습과 관련된 법적 기준이 개정되었고 실습기간, 실습 가능기관의 조건 등이 변경되었음을 예비보육교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다.

<Table 3> Distinction between directors, childcare teachers, and pre-service teachers toward revised childcare practicum (N=290)

Variable	Director ^a (<i>n</i> =32)	Child care teacher ^b (<i>n</i> =143)	Pre-service teacher ^c (<i>n</i> =115)	<i>F</i>	Post test
	<i>M</i> (<i>SD</i>)	<i>M</i> (<i>SD</i>)	<i>M</i> (<i>SD</i>)		
Perception of revised childcare practicum	2.21 (.51)	2.13 (.53)	1.85 (.48)	11.98***	a,b>c

*** $p<.001$

어린이집 원장의 최종학력과 경력에 따른 보육실습 개정안의 인식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최종학력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F=4.83, p<.01$), 원장의 경력과 보육실습 개정안의 인식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F=.584$). 최종학력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보육교사 교육원을 수료한 집단과 대학원 졸업 이상의 집단 중 대학원 졸업 이상의 집단이 보육실습 개정안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장의 경력과 관련 없이 원장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보육실습과 관련된 법적 기준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보다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Table 4> Directors perceive revised childcare practicum compared to Final Education (N=32)

Variable	Complete childcare education center ^a (<i>n</i> =3)	College degree ^b (<i>n</i> =2)	Academic credit bank system degree ^c (<i>n</i> =2)	University graduate ^d (<i>n</i> =11)	Post graduate or more ^e (<i>n</i> =12)	Other ^g (<i>n</i> =2)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Perception of revised childcare practicum	1.56 (.26)	1.75 (.35)	2.17 (.00)	2.03 (.40)	2.58 (.45)	2.42 (.12)
<i>F</i>	4.83**					
Post test	a<e					

** $p<.01$

<Table 5> Difference in recognition of revised childcare practicum according to possessing childcare teacher certificate (N=143)

Variable	Child care teacher Level 2 Certificate ^a (<i>n</i> =64)	Child care teacher Level 1 Certificate ^b (<i>n</i> =62)	Family child care center director ^c (<i>n</i> =11)	Private child care center director ^d (<i>n</i> =6)	<i>F</i>	Post test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Perception of revised childcare practicum	14.44 (2.74)	11.08 (2.89)	12.09 (2.43)	13.50 (3.15)	15.49***	a/b

*** $p<.001$

보육교사가 소지한 자격증에 따른 보육실습 개정안 인식의 차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교사가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에 따라 보육실습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15.46, p<.001$). 사후검정 결과, 보육교사 2급과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지닌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보육교사 2급을 지닌 집단이 1급을 지닌 집단보다 보육실습 개정안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보육교사는 보육 경력이 많을수록 2급에서 1급, 가정어린이집 원장 자격, 일반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보육교사 1급, 가정어린이집 원장, 일반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교사보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는 교사가 보육실습 개

정안을 보다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은 보육교사의 경력과 보육실습 개정안에 대한 인식의 관련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그리고 예비보육교사의 보육실습 개정안의 목적 및 세부 내용에 대한 적정성과 그 이유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Table 6>과 같다.

보육실습 개정안의 목적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chi^2=5.99, p>.05$)보육실습 개정안의 목적을 보육실습생의 전문성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92%로 많았다.

보육실습 기간을 4주에서 6주로 연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간연장이 더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chi^2=5.99, p<.001$). 보육실습 기간 연장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이유는 모든 집단에서 기간이 연장됨으로서 보육실습생의 보육 현장 관련 경험이 증가된다(68.5%)는 점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 실습생의 전문성이 증진될 것(22.2%)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집단 간 빈도를 살펴보면, 예비보육교사는 실습기간 연장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빈도가 타 집단에 비해 높았고(56.3%), 그 이유로 보육실습생의 피로도 증가로 인한 보육실습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49.2%)고 하였다.

보육실습가능기관을 평가인증 유지기관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chi^2=7.07, p<.001$) 적절하다는 의견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에 비해 높았다.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예비교사 모두 평가 인증을 통해 보육의 질이 검증된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이 진행되는 것이 실습생으로 하여금 바람직한 보육교사의 역할을 모델링 할 수 있어 긍정적인 보육실습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71.5%). 모든 집단에서 적은 수의 응답(9.8%)이지만 보육실습가능기관을 평가인증 유지기관으로 제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유지와 보육실습 지도의 질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이 밝혀진 것이 없는 바 이를 보육실습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65.4%).

보육실습지도교사를 종전과 동일하게 보육교사 1급, 유치원정교사 1급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chi^2=10.54, p<.01$) 적절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로 모든 집단에서 보육교사1급, 유치원정교사1급은 보육교사 양성과정 후 일정한 현장경력이 있는 교사로서 현장 경력이 높은 보육교사가 실습

생을 지도해야 보육실습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59.8%) 그 다음으로 일정 자격 취득 이상인 보육교사가 실습생을 지도해야 정확한 보육 관련 내용을 지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33.3%)고 답변하였다.

보육실습지도교사 1인당 실습생 3명 이내로 지도하는 방안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27.70, p<.001$).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예비보육교사 집단 전체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부적절하다는 응답보다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 이유로는 보육실습지도교사가 동시에 너무 많은 실습생을 지도하면 보육실습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81.9%).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보육교사 집단만을 살펴보면 보육실습생 1인당 실습생 3명 이내로 지도하는 것에 대하여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으며(56.6%) 그 이유로 교사 1인당 실습생 3명을 동시에 지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실습 지도를 저해한다고 응답하였다(62.2%). 즉, 어린이집 원장, 예비보육교사는 실습지도교사 1인당 실습생 3명의 지도를 적절하며 보육실습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보육실습생의 직접 지도 빈도가 높은 보육교사는 실습지도교사 1인당 실습생 3명을 동시에 지도하는 것은 보육실습의 질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것이다.

<Table 6> Director, childcare teacher, and pre-service teachers' specific awareness on revised childcare practicum (N=290)

Variable	Frequency				χ^2
	Director (n=32) (%)	Child care teacher (n=143) (%)	Pre-service teacher (n=115) (%)	All (n=290) (%)	
Purpose of revised childcare practicum					
Professional development	19 (59.4)	64 (44.8)	47 (40.9)	130 (44.8)	5.99
Improve field adaptability	13 (40.6)	65 (45.5)	59 (51.3)	137 (47.2)	
Establishing desired personality	0 (0.0)	13 (9.1)	8 (7.0)	21 (7.2)	
Other	0 (0.0)	1 (0.7)	1 (0.9)	2 (0.7)	
	32 (11.0)	143 (49.3)	115 (39.7)	290 (100.0)	

.....					28.00*					10.54*
Period extention					**	Maintain the standard of teacher education					*
Adequate	25 (15.4)	94 (58.0)	43 (26.5)	162 (100.0)		Adequate	31 (11.7)	136 (51.5)	97 (36.7)	264 (100.0)	
Reason						Reason					
Professional development	6 (24.0)	20 (21.3)	10 (23.3)	36 (22.2)		Enhance childcare practicum's quality	15 (48.4)	88 (64.7)	55 (56.7)	158 (59.8)	
Improve field adaptability & childcare experience	17 (68.0)	64 (68.1)	30 (69.8)	111 (68.5)	.59	Build good relationship	2 (6.5)	10 (7.4)	5 (5.2)	17 (6.4)	6.25
Broad relationship	2 (8.0)	10 (1.0)	3 (7.0)	15 (9.3)		Can deliver knowledge clearly	14 (45.2)	37 (27.2)	37 (38.1)	88 (33.3)	
Other	0 (0.0)	0 (0.0)	0 (0.0)	0 (0.0)		Other	0 (0.0)	1 (0.7)	0 (0.0)	1 (0.4)	
Inadequate	7 (5.5)	49 (38.3)	72 (56.3)	128 (100.0)		Inadequate	1 (3.8)	7 (26.9)	18 (69.2)	26 (100.0)	
Reason						Reason					4.30
Practical 4week training course	1 (14.3)	17 (34.7)	27 (37.5)	45 (35.2)	9.20	Not enough relavance	1 (100.0)	5 (71.4)	11 (61.1)	17 (65.4)
Significant workload to guidance tutor	2 (28.6)	10 (20.4)	4 (5.6)	16 (12.5)	Heavy workload	0 (0.0)	1 (14.3)	7 (38.9)	8 (30.8)
Decresed quality due to trainees' fatigue	4 (57.1)	20 (40.8)	39 (54.2)	63 (49.2)	Difficulties operating while having too many trainee	0 (0.0)	1 (14.3)	0 (0.0)	1 (3.8)
Other	0 (0.0)	2 (4.1)	2 (2.8)	4 (3.1)	Other	0 (0.0)	0 (0.0)	0 (0.0)	0 (0.0)	
.....					7.07					27.70
Limiting childcare practicum institute						Have less than 3 trainee					
Adequate	21 (8.8)	119 (49.8)	99 (41.4)	239 (100.0)		Adequate	22 (12.9)	62 (36.3)	87 (50.9)	171 (100.0)	
Reason						Reason					
Establish desired modeling	18 (85.7)	90 (75.6)	63 (63.6)	171 (71.5)		Prevent quality lost than having too many trainee	16 (72.7)	55 (88.7)	69 (79.3)	140 (81.9)	
Establish desired administrative type	3 (14.3)	23 (19.3)	32 (32.3)	58 (24.3)	11.51	Satisfy educational demand	2 (9.1)	2 (3.2)	12 (13.8)	16 (9.4)	7.58
Enhance guidance for childcare practicum	0 (0.0)	6 (5.0)	2 (2.0)	8 (3.3)		Able to evaluate others well	4 (18.2)	5 (8.1)	6 (6.9)	15 (8.8)	
Other	0 (0.0)	0 (0.0)	2 (2.0)	2 (0.8)		Other	0 (0.0)	0 (0.0)	0 (0.0)	0 (0.0)	
Inadequate	11 (21.6)	24 (47.1)	16 (31.4)	51 (100.0)		Inadequate	10 (8.4)	81 (68.1)	28 (23.5)	119 (100.0)	
Reason						Reason					
Schedule Disruption	2 (18.2)	2 (8.3)	5 (31.3)	9 (17.6)		Difficulties in teaching	7 (70.0)	46 (56.8)	21 (75.0)	74 (62.2)	
Not enough relavance	7 (63.6)	18 (75.0)	10 (62.5)	35 (68.6)	4.09	Heavy workload	2 (20.0)	24 (29.6)	4 (14.3)	30 (25.2)	7.29
Heavy workload	2 (18.2)	4 (16.7)	1 (6.3)	7 (13.7)		Inconsistent guidance to every infant	1 (10.0)	11 (13.6)	2 (7.1)	14 (11.8)	
Other	0 (0.0)	0 (0.0)	0 (0.0)	0 (0.0)		Other	0 (0.0)	0 (0.0)	1 (3.6)	1 (0.8)	
.....										

** $p < .01$, *** $p < .001$

4.2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예비보육교사의 보육실습 개정안 운영에 대한 요구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예비보육교사 간의 보육실습 개정안 운영에 대한 요구 분석은 <Table 7>과 같다. 4주에서 6주로 연장된 보육실습 기간의 운영에 대해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x^2=31.60, p<.001$).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예비보육교사의 의견을 전체 집단으로 보았을 때 보육실습 기간을 학기 별로 3주씩 또는 2주와 4주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보다 6주를 연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48.6%) 보육실습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속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7.4%).

집단 간 빈도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원장(71.9%)과 보육교사(58.7%)는 6주 연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학기별로 운영하는 것보다 적절하다고 가장 높게 응답한 반면 예비보육교사(47.0%)는 학기별로 3주씩 나누어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것이 타 집단 보다 높았다. 예비보육교사는 그 이유로 학기별로 실습생의 수행 정도에 따라 보육실습 과정을 단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55.6%).

6주간의 보육실습 기간 중 실습생의 배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x^2=5.07, p>.05$). 그러나 빈도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원장은 실습생을 동일학급에 배치하는 방안(31.3%)과 연령에 따라 기간을 나누어 배치하는 방안(34.4%)에 대한 응답률이 비슷하였으나, 보육교사(48.3%)와 예비보육교사(42.6%)는 동일한 학급보다는 영아반, 유아반으로 기간을 나누어 배치하는 것에 높게 응답하였고 그 이유로 영아반과 유아반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Table 7> Director, childcare teacher, and pre-service Teachers' need for managing revised childcare practicum (N=290)

Variable	Frequency				x^2
	Director (n=32) (%)	Child care teacher (n=143) (%)	Pre-service Teacher (n=115) (%)	All (n=290) (%)	
Sufficient way to operate					31.60***

6 Continuous week Running managing connectivity in childcare practicum	23 (71.9)	84 (69.0)	34 (58.8)	14 (48.6)	4.40
managing consistency in childcare practicum	5 (21.7)	11 (13.1)	7 (20.6)	23 (16.3)	
Improve field adaptation	1 (4.3)	15 (17.9)	7 (20.6)	23 (16.3)	
Other	0 (0.0)	0 (0.0)	0 (0.0)	0 (0.0)	
3 weeks per semester, running 3 weeks each	7 (21.9)	42 (29.4)	54 (47.0)	103 (35.5)	10.83
Can repeat each semester	0 (0.0)	5 (11.6)	7 (13.0)	12 (11.5)	
Flexible class according to infants' progress	1 (14.3)	16 (37.2)	30 (55.6)	47 (45.2)	
Customized class based on knowledge	6 (85.7)	20 (46.5)	15 (27.8)	41 (39.4)	
Other	0 (0.0)	2 (4.7)	2 (3.7)	4 (3.8)	
2 weeks per semester, running 4 weeks each	2 (6.3)	17 (11.9)	25 (21.7)	44 (15.2)	
Can separate pre-practicum and practicum	2 (100.0)	6 (37.5)	14 (23.0)	22 (51.2)	
Can observe, plan class	0 (0.0)	9 (56.3)	6 (24.0)	15 (34.9)	
Can create specialization course	0 (0.0)	1 (6.3)	4 (16.0)	5 (11.6)	
Other	0 (0.0)	0 (0.0)	1 (4.0)	1 (2.3)	
Other	0 (0.0)	0 (0.0)	2 (1.7)	2 (0.7)	
Effective placement of trainee					5.07
Learn the same for 6 weeks	10 (31.3)	34 (23.8)	36 (31.3)	80 (27.6)	10.50
Understand school management and characteristic	10 (100.0)	18 (52.9)	18 (50.0)	46 (57.5)	
Understand Infants and toddlers' characterization	0 (0.0)	11 (32.4)	14 (38.9)	25 (31.3)	
Understand school program	0 (0.0)	5 (14.7)	3 (8.3)	8 (10.0)	
Other	0 (0.0)	0 (0.0)	1 (2.8)	1 (1.3)	

Placement by age or class	11 (34.4)	40 (28.0)	29 (25.2)	80 (27.6)	
Understand infants and toddlers' characterization	5 (45.5)	21 (53.8)	16 (53.3)	42 (52.5)	1.10
Understand childcare program's characteristic	5 (45.5)	12 (30.8)	9 (30.0)	26 (32.5)	
Understanding teacher's role by age	1 (9.1)	6 (15.4)	5 (16.7)	12 (15.0)	
Other	0 (0.0)	0 (0.0)	0 (0.0)	0 (0.0)	
Placement dividing toddler or infant	11 (34.4)	69 (48.3)	49 (42.6)	129 (44.5)	
Understand infants and toddlers' characteristics	6 (54.5)	25 (35.7)	22 (45.8)	53 (41.1)	8.31
Understand different programs	4 (36.4)	38 (54.3)	15 (31.3)	57 (44.2)	
Understanding teacher's role according to infants and toddler	1 (9.1)	7 (10.0)	11 (22.9)	19 (14.7)	
Other	0 (0.0)	0 (0.0)	0 (0.0)	0 (0.0)	
Other	0 (0.0)	0 (0.0)	1 (0.9)	1 (0.3)	

*** $p < .001$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예비보육교사들이 보육실습이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요구 차이는 <Table 8>과 같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chi^2=47.29$, $p < .001$) 가장 많은 응답은 실습가능기관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었으며(34.8%) 이를 위해서는 평가인증 이외에 보육실습과정과 관련된 평가를 통해 보육실습이 가능한 기관을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54.4%). 그 다음으로는 양성기관과 보육실습기관과의 연계과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며(34.1%) 이를 위하여 실습생, 실습지도교사, 실습담당교수 3인의 의사소통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하였다(69.7%).

집단 간 빈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예비보육교사의 가장 많은 수가 전체 집단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보육실습가능기관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47.0%)한 반면,

어린이집 원장(37.5%), 보육교사(40.0%)는 정규보육실습 이외에 사전 및 사후보육실습을 추가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다.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가 사전 및 사후보육실습을 추가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한 내용은 차이가 있었는데 어린이집 원장은 사전 및 사후실습을 통해 보육실습생이 자신이 보육교사로서 적합한지를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50.0%)고 응답하였으며 보육교사는 사전 및 사후실습을 통해 실습생이 어린이집의 1년 운영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어서라고 응답하였다(37.9%).

<Table 8> Directors, childcare teachers and pre-service teachers' additional request toward revised childcare practicum (N=290)

Variable	Frequency				χ^2
	Director (n=32) (%)	Child Care Teacher (n=143) (%)	Pre-serv Teacher (n=115) (%)	All (n=290) (%)	
Part of childcare practicum that needs to be strengthened					47.29***
Training course extention					
7 to 8 weeks	1 (100.0)	4 (57.1)	0 (0.0)	5 (62.5)	
9 to 10 weeks	0 (0.0)	1 (14.3)	0 (0.0)	1 (12.5)	.69
11 to 12 weeks	0 (0.0)	2 (28.6)	0 (0.0)	2 (25.0)	
Other	0 (0.0)	0 (0.0)	0 (0.0)	0 (0.0)	
Introduce quality-related conditions					
Introduce number of evaluation certification	1 (11.1)	3 (7.7)	11 (20.0)	15 (14.6)	
Introduce evaluation certification area score	2 (22.2)	14 (35.9)	15 (27.3)	31 (30.1)	4.50
Introduce course selection process other than evaluation certification	6 (66.7)	22 (56.4)	28 (50.9)	56 (54.4)	
Other	0 (0.0)	0 (0.0)	1 (1.8)	1 (1.0)	

Introduce pre/post courses other than regular course	12 (37.5)	58 (40.6)	9 (7.8)	79 (27.2)	3.12
1 year childcare center experience	3 (25.0)	22 (37.9)	2 (25.0)	27 (34.6)	
Consider suitability for childcare teacher	6(50.0)	15(25.9)	3(37.5)	24(30.8)	
Inhance local suitability	3 (25.0)	21 (36.2)	3 (37.5)	27 (34.6)	4.88
Other	0(0.0)	0(0.0)	0(0.0)	0(0.0)	
establishing relationship between training stitutes and childcare centers	10 (31.3)	38 (26.6)	51 (44.3)	99 (34.1)	
Introduce communication system for guidance teacher and practicing professor	3 (30.0)	8 (21.1)	16 (31.4)	27 (27.3)	4.88
Introduce communication system for trainee, guidance teacher and practicing professor	6 (60.0)	28 (73.7)	35 (68.6)	69 (69.7)	
Order practicing professor to visit childcare center	1(10.0)	2(5.3)	0(0.0)	3(3.0)	
Other	0(0.0)	0(0.0)	0(0.0)	0(0.0)	
Other	0(0.0)	1(0.7)	1(0.9)	2(0.7)	

* $p < .05$, ** $p < .01$, *** $p < .001$

5. 논의

본 연구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예비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2017.1.1일부터 본격

적으로 적용되는 보육실습 개정안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가 예비보육교사보다 보육실습 개정안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실시되는 관련공공기관 교육 등을 통해 보육실습 변경안에 대한 다양한 인식의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양성기관의 교과 내용에는 아직 자세히 포함되지 다루어지지 않아 예비보육교사가 개정안을 인식하기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실습 개정안에 대한 인식도를 살펴보면, 경력과 상관없이 학력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즉, 대학원 졸업 이상이 최종학력인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교육원을 수료한 어린이집 원장보다 개정안 인식이 높았다. 또한 보육교사의 소지 자격에 따른 인식도를 살펴보면, 보육교사2급 자격을 소지한 보육교사가 보육교사1급을 소지한 보육교사보다 보육실습 개정안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최종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보육 정책에 대한 인식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경력과는 관련성이 없었다. 보육교사의 경우, 보육교사2급 자격 소지자는 보육경력 만2년이 지나면 보육교사1급 승급 과정을 수강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 보육실습과 관련된 과목이 편성되어 있어 보육실습 개정안에 대한 인식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예비보육교사를 전체 집단으로 보았을 때 보육실습 기간 연장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며 그 이유로 보육실습생의 보육현장 관련 경험 증가와 전문성 증가를 들고 있다. 이는 4주의 실습 기간이 예비보육교사가 보육현장을 경험하기에는 짧다고 지적한 선행연구들[22,23]과 일치한다. 각 집단 간 빈도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는 기간 연장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현저하게 높았으나 예비보육교사 집단은 기간 연장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타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그 이유로 보육실습의 피로도 증가를 들고 있다. 보육실습 기간의 연장은 보육실습의 질과 예비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단, 예비보육교사가 보육실습 전 불안감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양성기관에서는 실습생의 막연한 불안감을 줄이고 실습생의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사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보육실습가능 기관을 어린이집 평가인증 유지기관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예비보육교사가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그 이유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통해 보육의 질이 검증된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이 진행되는 것이 실습생으로 하여금 바람직한 보육교사의 역할을 모델링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예비보육교사가 보육실습기관의 질이 보육실습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육실습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실습기관 선정의 객관적인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선행연구[19,20]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다섯째, 보육실습지도교사의 자격을 종전과 동일하게 보육교사1급, 유치원정교사 1급으로 제한한 것을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예비보육교사 모두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실습 기간 동안 실습지도교사의 모든 행동이 예비보육교사에게 모델이 되며 지도교사의 아동관, 보육철학, 보육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쳐[24],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실습지도교사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육실습지도교사를 경력교사로 제한시켜야 한다는 선행연구결과[20]와 일치하는 것이다. 즉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예비보육교사는 보육실습지도교사의 질이 보육실습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육교사1급, 유치원정교사1급은 양성과정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의 보육 관련 현장 경험이 있어야 취득하는 자격으로 현장 경력이 있는 보육교사가 보육실습을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보육실습지도교사 1인당 실습생 3명 이내로 지도하는 방안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예비보육교사 전체로 살펴보면, 적절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으나 보육교사 집단에서는 타집단에 비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의 빈도가 높다. 전체적으로 적절하다는 생각하는 이유와 보육교사 집단에서 부적절하다는 이유 모두 보육실습의 질 유지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보육실습지도교사 1인당 동시에 지도하는 실습생이 많으면 보육실습의 질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예비보육교사 모두 인식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원장, 예비보육교사는 동시에 3명 지도가 많은 수가 아니라고 인식하는데 반해 보육실습생의 직접 지도를 맡는 보육실습지도교사는 3명 지도가 많은 수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육교사가 타 집단

과 달리 실습생 3명 지도를 많은 수라고 인식하는데는 보육실습지도교사로 선정되면 담당 학급과 영유아를 책임지는 동시에 보육실습을 지도하는 책임을 지게 되어 그만큼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보육실습지도교사가 실습을 지도하는 동안에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고안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보육실습을 6주 연속 운영하는 것이 학기별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보다 더 적절하다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 보육실습의 연계성을 들었다. 집단 간 빈도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는 6주 연속 운영에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으나 예비보육교사의 경우 학기별로 3주씩 나누어 운영하는 방안이 타 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고 그 이유로는 학기별로 실습생의 수행수준을 나누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즉,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는 보육실습의 연계성이 가장 중요하여 6주 연속 운영을 선호하나 예비보육교사는 학기별로 나누어 보육실습에 참여하는 것이 학기별 자신의 수준을 감안하기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예비보육교사가 학기별로 3주씩 나누어 보육실습 기간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것은 보육실습 기간이 6주로 연장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빈도가 높은 것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며 예비보육교사의 보육실습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보인다. 양성기관의 보육실습 사전 교육에서 예비교사의 보육실습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보육실습 준비교육이 필요하다.

여덟째, 개정안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보육실습가능기관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평가인증 유지 이외의 선별 과정이 필요하다고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예비보육교사가 유의미하게 응답하였다. 집단 간 빈도를 살펴보면, 예비보육교사는 다른 어떤 사항보다 보육실습가능기관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선별 과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는 사전 및 사후실습의 추가를 통해 실습생의 보육교사로서의 적합성, 어린이집의 1년간 운영과정 경험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보다 상회하였다. 이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예비보육교사 모두 보육실습기관의 질이 보육실습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는 보육실습 기간의 연장 이외에도 사전 및 사후실습이 예비보육교사로서 자신의 자질 점검과 보육 경험 확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실습은 교사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마과정으로 사전교육, 정규실습, 추후교육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연구[5],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위한 어린이집의 보육실습에 대한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는 질 높은 보육실습기관을 선별해야 한다는 연구[19]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6. 결론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경력과 상관없이 소지자격,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보육과 관련된 개정안에 민감하며 보육교사의 경우는 소지자격보다 개정과 관련된 재교육이 인식을 좌우하였다. 이에 보육실습 개정안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종학력이 낮은 원장과 범정부 수교육에서 보육실습과 관련된 과목을 수강할 수 없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보육실습 변경안에 대한 지자체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비보육교사의 다양한 보육 경험과 보육교사로서의 적합성을 점검하기 위한 보육실습 기간 연장은 적절하나 보육교사의 실습 지도에 대한 부담감 조절을 위한 방안과 예비보육교사의 보육실습 기간 연장에 따른 부담감 해소를 위한 양성기관과 보육실습기관이 사전교육 및 협의체계가 필요하다.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예비보육교사는 보육실습기관 및 실습지도교사의 질, 실습지도교사 1인당 지도 실습생 수가 보육실습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였으며 특히, 보육실습기관의 질을 선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추가 요구가 있는 바, 이와 관련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겠다.

보육실습 개정안으로 실습 기관 및 실습 기관에 대한 내용의 변경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초기에는 혼선이 있을 수 있으나 교직원들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보육교사 집단 중 아직 보육실습을 경험하지 못한 대상이 많은 바, 보육실습을 경험한 집단을 포함시켜 비교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보육실습 개정안의 현장 적용 전, 관련 인적 환경의 인식과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실행되었다. 앞으로 보육실습

개정안이 보육현장에 적용되고 난 후 추가 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보육실습 운영 방안에 대한 제안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보육실습 과정 개정안과 관련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예비보육교사의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고 그 요구를 분석하여 보육실습 개정안의 성공적인 실행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REFERENCES

- [1] M. A. Kim, "Theories and Practice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 Bottom-up Perspectiv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6, pp. 107-119, 2017.
- [2] K. M. Yun and B. J. Jeon, "A Comparative Study on the Turnover Intention of Teacher by Child Care Center's Typ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 pp. 25-35, 2015.
- [3] K. N. Shin, "The effects of Workplace Incivility, Burnout and Teacher Efficacy on Job Satisfaction in Nursery Teacher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8, pp. 371-381, 2016.
- [4] H. J. Cho, J. S. Kim and E. H. No,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Field Practice of Child Car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Vol. 3, No. 2, pp. 243-276, 2003.
- [5] S. H. Yoon, "The Impact of student Teachers' Characteristics on Ensuing Experience of Child Care Practicum and the Satisfaction with the Practicum."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Vol. 9, No. 3, pp. 41-67, 2009.
- [6] S. M. Lee, "Listening to What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Say About Early Childhood Practicum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9, No. 4, pp. 179-200, 2012.
- [7] H. k. Lee, "Student Teachers' Perceptions on the Teachers' Role in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Journal of Young Child Studies*, Vol. 14, pp. 41-55, 2011.

- [8] N. R. Kiim and K. H. Kwak, "Changes i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Image and Conflict as Teachers Before and After Practicum."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Vol. 13, No. 4, pp. 277-304, 2013.
- [9] J. W. Kim and H. S. Jo, "Changes i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Image as Teachers Before and After Practicum: Focused on in-depth interviews in teacher-self portrait."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9, No. 2, pp. 1-19, 2012.
- [10] E. j. Park, "The Effects of Prospective Child Care Teachers' Aptitude on Child Care and Teaching Practice Stress."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Vol. 16, No. 1, pp. 163-182, 2016.
- [11] S. Y. Kim and W. K. Seo, "Stress and Coping Associated with an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Practicum : The Student Teacher's Perspectiv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31, No. 2, pp. 135-150, 2010.
- [12] P. Danyluk, "The Role of the Prepracticum in Lessening Student Teacher Stress: Student Teachers' Perceptions of Stress during Practicum.", *Action in Teacher Education*, Vol. 35, No. 5, pp. 323-334, 2013.
- [13] P. Y. Shin, "A study on the practicum present state of the pre-service teachers focusing on the child-care relation department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Vol. 14, No. 2, pp. 57-80, 2010.
- [14] A. K. Park, "A Study on Effects of Practice in Day Care on Student - Teachers' Self - concept and Teachers' Efficacy Beliefs on Play."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Vol. 13, No. 4, pp. 175-193, 2009.
- [15] B. Spodek, B. & O. N. Saracho, "Preparing early childhood teachers. In B. Spodek, & Saracho, (Eds.), *Early childhood teacher preparation.*", p.23-44, Teachers College Press, 1990.
- [16] M. H. Lee, S. R. Lim, H. S. Jo, E. Y. Yoo and S. Y. Song, "A Study on the Curriculum Development Model for Childcare Support Workforc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pp. 109-141, 2007.
- [17] V. A. Johnson, M. A. Karen., & D. A. Crosby, "Early Practicum Experiences: Preservice Early Childhood Students' Perceptions and Sense of Efficacy"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Vol. 45, No. 2, pp. 229-236, 2017.
- [18] D. Cheryll, "The role of the cooperating teacher in a school-based teacher education program: Benefits and concern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Vol. 10, No. 3, 345-353, 1994.
- [19] Y. H. Sim, "The Definition and Improvement Proposal of Childcare Training in the Perspective of the Public Childcare Training Centers."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Vol. 16, No. 2, pp. 17-38, 2016.
- [20] E. H. Kim, M. H. Suh, M. Y. Sung, and M. H. Min, "Analysis of the Current Condition of Student Childcare Training in Korea: Student Childcare Training Centers, Guidance Teachers, Student Teachers and Student Childcare Training Fee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48, No. 6, pp.57-70, 2010.
- [21] J. S. Kim and K. A. Song, "An Analysis of Guidance Contents of Cooperating Teachers in Child Care Practicum.",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Vol. 10, No. 1, pp. 91-107, 2013.
- [22] M. H. Lee, E. J. Kang, E. Y. Kim, G. S. Kim and J. Y. Um, "Childcare Teacher Training Course and Practicum Manual Research.", Ministry of Health & Welfare and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p. 206, 2016.
- [23] W. J. Cho and M. R. Shon, "The Analysis of Student Teaching Program for Teacher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Young Child Studies*, Vol. 8, pp. 181-201, 2013.
- [24] H. J. Young, and Y. E. Kim, "Pre-service Childcare Teachers' Perception Changes of the Childcare Teaching Profession through the Experience of Childcare Practic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Vol. 16, No. 3, pp. 1-26, 2016.

최 석 란(Choi, Suk Ran)



- 1988년8월 :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교육학 박사)
- 1991년 3월 ~ 현재 :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 2014년 9월 ~ 2016년 8월 :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장
- 2017년 9월 ~ 현재 : 서울여자대학교 미래교육단장

• 관심분야 : 유아교육 · 영유아보육
• E-Mail : srchoi@swu.ac.kr

서 원 경(Seo, Won Kyung)



- 2004년8월 :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전공 (교육학 박사)
 - 2005년 3월 ~ 2016년 2월 : 서울청사한빛어린이집 원장
 - 2016년 3월 ~ 현재 : 서울여자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특임교수
- 관심분야 : 유아교육 · 영유아보육
• E-Mail : wonkyung410@swu.ac.kr